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7년 11월 26일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11월 26일

3. 제안이유

-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이 위임(보건 복지부령 제13호)되었으며
-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유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와의 균형유지, 시험 집행에 따른 소요경비 등 제반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이를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신설하여 시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-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당초 2,000원에서 5,000원으로 변경하며

○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당초와 변경없이 500원으로 조례에 신설함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본 조례안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보건 복지부령 제13호로 개정되어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자격시험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신청시 건당 5,000원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첨 부

○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